

1. 공급개요

- 공급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A2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0층 24개동 총 1,845세대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총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민영 주택	059.8471A	59A	59.8471	22.1846	82.0317	47.5053	129.5371	837
	059.7087B	59B	59.7087	22.8440	82.5527	47.3955	129.9481	266
	084.9192A	84A	84.9192	29.9561	114.8753	67.4071	182.2823	642
	084.9252B	84B	84.9252	30.2075	115.1327	67.4117	182.5445	100
	합계							

※ 상기 면적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수 : 185세대

(단위 : 세대)

구분	59A		59B		84A		84B		합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국가유공자	17	(85)	5	(25)	13	(65)	2	(10)	37	(185)	
장기복무제대군인	16	(80)	6	(30)	12	(60)	2	(10)	36	(180)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17	(85)	5	(25)	13	(65)	2	(10)	37	(185)	
중소기업근로자	17	(85)	5	(25)	13	(65)	2	(10)	37	(185)	
장애인	전라남도	9	(45)	3	(15)	7	(35)	1	(5)	20	(100)
	광주광역시	8	(40)	3	(15)	6	(30)	1	(5)	18	(90)
<b>소계</b>	<b>84</b>	<b>(420)</b>	<b>27</b>	<b>(135)</b>	<b>64</b>	<b>(320)</b>	<b>10</b>	<b>(50)</b>	<b>185</b>	<b>(925)</b>	

-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 처리됩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실,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23.07.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라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 공급 일정(예정)

모집공고일(예정)	특별공급 신청일	당첨자발표	계약일
2023.09.08.(금)	2023.09.18.(월)	2020.09.27.(수)	2023.10.10.(화) ~ 10.12(목)

※ 모집공고일 등 상기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ul>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li>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ul> </li> </ul>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li>-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규제지역은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규제지역은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규제지역은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ul> </li>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li> </ul>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장성군 등)	그 밖의 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장성군 및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전국에 거주하는 자
- ②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자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③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	해당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광주지방보훈청 복지과	청약통장 필요 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중소기업근로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장애인	전라남도청 장애인복지과 / 광주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청약통장 필요 없음

#### 4. 당첨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유의사항

※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선정되며 1순위 가정제 및 추첨제 당첨자와 함

게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 해당 주택형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 주택형 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공급하고 이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신청자 모두를 무작위 추첨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 ※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은 일반공급 발표일에 동시 발표.
- ※ 특별공급 대상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관련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접수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하여야 함(서류제출 없음)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견본주택(10:00~14:00)에서 신청 가능(자격증명 및 구비서류 제출)
- ※ 동일주택에 한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청약은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 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신청한 경우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가능)
- ※ 예비입주자 추천 여부는 기관이 결정하고 예비입주자 추천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음(타 유형 특별공급 미달 시 예비입주자가 당첨될 수도 있음)
- ※ 기관추천 대상자가 청약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세대는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기관추천 예비입주자 포함)에게 공급
- ※ 특별공급, 일반공급 동시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 특별공급을 우선 배정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배정 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지위는 무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포기하고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택 불가
  - 다만, 특별공급 예비입주자가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 기회가 상실된 경우 일반 예비순번 지위 인정
- ※ 공급금액, 전매제한,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신청 타입별 세부사항 등은 견본주택 및 인쇄제작물,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자료

■ 조감도



■ 건본주택 위치



첨단 제일풍경채 A2BL A5BL

<b>A2BL</b>	<b>A5BL</b>
59/84 총 1,845세대	116/131/184 총 584세대

CONTACT

**1551-1201**

상기 안내문의 제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사오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 및 대표번호 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